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만공사 명칭에 ‘관련 항만·행정구역명’ 병기 및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관할구역에 따른 항만위원 동수 구성〉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97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항만공사 명칭에 ‘관련 항만·행정구역명’ 병기	4
2.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관할구역에 따른 항만위원 동수 구성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4.
3. 회 부 일 : 2025.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한다, 이하 ‘신항’이라고 한다)은 2019년부터 경남에 소재한 진해신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 이하 같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신항의 개발을 추진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 진해가 소재한 지역명 ‘경남’이 누락 돼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됨.

2024년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8년 뒤인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중 24개 선석(전체의 51%)은 경남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행정구역상 부산에 위치할 계획임.

이후에는 진해신항에만 선석 건립 작업이 진행돼 2040년에는 신항

의 총 59개 선석중 36개 선석(61%)이 경남에서 운영되고, 부산에는 추가 선석 건립계획이 없어 2032년과 동일한 23개(39%) 선석만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결국 2032년에는 선석 기준으로도 진해신항이 부산을 추월하고, 2040년에는 신항 선석의 약 2/3가 진해신항에 위치 할 계획임.

신항 배후단지의 대부분(86.3%)도 진해신항 인근에 있고, 2024년 12월에는 진해 소재 그린벨트 해제로 추가적인 배후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신항은 2029년 3선석이 우선 개장되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임.

그런데 진해신항의 행정구역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지만, 신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명칭에는 여전히 ‘경남’ 지명이 누락된 채 ‘부산항만공사’라는 이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임.

항만법 시행령 별표 1(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에서 부산항 수상구역의 시작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에서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설립하고,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같이 2개 이상의 항만 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항만(경인항: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화성시·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또는 항만의 명칭에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항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에도 가칭 ‘경남부산항만공사’와 같이 신항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주요내용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연접되어 있는 경우 공사의 명칭을 항만 및 항만시설 이용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토록 개선하고(안 제9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항만공사의 이름에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명칭을 모두 포함시키는 입법을 계기로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여 항만이 소재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항만공사 명칭에 ‘관련 항만·행정구역명’ 병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연접되어 있는 경우, 항만공사의 명칭은 관련 항만 또는 해당 행
정구역을 모두 병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략) ＜신 설＞	제9조(공사의 명칭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 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연접되 어 있는 경우, 공사의 명칭은 관 련 항만 또는 특별시·광역시· 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제2항에서는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항만별’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에 공사를 각각 설립하도록 함.

- 다만, 현행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 시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시행령에서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¹⁾,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됨.
- 이 중 부산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은 현행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²⁾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를 아우르는 부산항의 항만구역임.³⁾

1) 「항만공사법」

제4조(법인격 등)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2) 「항만공사법」

제4조(법인격 등)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①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별표] 공사의 관할 구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관할 구역
1. 부산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부산항의 항만구역
2. 인천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인천항의 항만구역
3. 울산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울산항의 항만구역
4.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여수항 및 광양항의 항만구역

3) 「항만법 시행령」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항만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어. 부산항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에서 우도 남 동단, 연도 서남단, 가덕도 남측 끝단(북위 34도 59 분, 동경 128도 49.5분 지점), 생도 남단, 오륙도 남 단,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지점,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지점) 및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 분 44.0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의 해면을 제외한 해면 1)~3) 생략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초·최대의 무역항인 부산항의
연혁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876년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개항한
부산항은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 진해신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항은 먼저, 부산광역시 북항에서 출발하여 국내 수산물의 약 50%를
취급하는 감천항, 어항 기능 및 도심 인근 시민 친수공간인 다대
포항으로 추가 개발되었음.



※ 부산항 진해신항 계획 전의 모습임

- 이후, 원도심에 자리잡은 북항의 한계(좁은 부두 면적, 배후시설 부족 등)를 극복하고 환적화물 증가에 따른 충분한 시설 능력 확보를 위해 1995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광역시 가덕도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부산항 신항을 개발·추진 중에 있음.

[부산항 신항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5~'30.
- 총사업비 : 17조 9,267억원(재정 7조 9,689억원, 민자 9조 9,578억원)
- 사업규모 : 부두 38선석, 방파제 2.89km, 호안 32.05km 조성 등
- 사업내용 : 동북아 물류중심의 항만기능과 상업·주거 등 도시기능이 융합된 종합공간 조성

※ 해양수산부

- 또한, 세계적으로 초대형 선박의 운항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항만인프라의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2022년부터 2040년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을 개발 추진 중에 있음.

[부산항 진해신항 사업개요]

구분		1단계(현행 기준)	2단계	전체
총사업비		7조 9,006억원 ·재정 2조 7,786억원 ·민자 5조 1,220억원	4조 7,283억원 ·재정 1조 2,641억원 ·민자 3조 4,642억원	12조 6,434억원 ·재정 4조 572억원 ·민자 8조 5,862억원
총 사업기간		'22.~'31.	'32.~'40.	'22.~'40.
공급 시기	'29년까지	3선석	-	3선석
	'32년까지	6선석	-	6선석
	장래	-	6선석	6선석
사업 내용	'컨'부두	9선석 (3만TEU급×9)	6선석 (3만TEU급×5, 피더부두×1)	15선석 (3만TEU급×14, 피더부두×1)
	방파제	1.4km	0.8km	2.2km
	배후단지	788천㎡	-	788천㎡

※ 해양수산부

□ 이처럼, 부산항 신항·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부산항 신항(이하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하고 “신항”이라 함)이 경상남도 행정구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바,

부산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비중을 고려하여 부산항 만공사의 기관명에도 진해가 소재한 행정구역인 ‘경남’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개발 관련 선석 비중]

구 분		계	부산	경남
2024	선석(개)	29개	19(66%)	10(34%)
2032	선석(개)	47개	23(49%) * 피더 2, 잡화 1, 양곡 1 미정 포함	24(51%) * 잡화 2 미정 포함
2040	선석(개)	59개	23(39%) * 피더 2, 잡화 1, 양곡 1 미정 포함	36(61%) * 잡화 2, 진해신항 2단계 6, 3단계 6 등 시기 미정 포함

※ 해양수산부(선석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12) 참고하여 작성)

□ 이에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명칭을 2개 이상의 연접된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도록 함으로써 부산신항에서 경남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역할과 비중을 공사 명칭병기를 통해 부각시키고 경상남도의 대외적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의 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대에 건설되는 ‘신항만’의 명칭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등이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2008년에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이 사건 ‘신항’의 명칭결정은 국가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2008.3.27. 2006헌라 1)⁴⁾을 하였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의 명칭은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및 항만공사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관할 지자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2008.3.27. 2006헌라1)

[결정요지] 일부발췌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신항만을 지정항만의 하위항만으로 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 항만구역의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역시 국가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신항만이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국가목적의 거대 항만인 점과 함께, 국가경쟁력, 국제적 인지도, 항만 이용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2005. 12. 19. 이 사건 신항만을 지정항만인 부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두되, 무역항인 ‘부산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항만의 공식명칭을 ‘신항’(영문명칭: Busan New Port)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항만공사의 명칭은 무역항의 명칭에 기초하고 있고, 해당 무역항의 항계와도 관련성이 높은 사안으로 공사 명칭 변경은 단순히 행정구역명을 추가하는 문제로 국한하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사를 해당 항만별(무역항)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를 아우르는 부산항의 항만구역이며, 진해신항은 북항, 신항, 다대포항 등 부산항의 하위 항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의 명칭은 행정구역명이 아닌 무역항 명칭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임.

- 경상남도는 신항만의 부두 선석 및 배후단지의 경남 비중이 40년에는 61%, 88%로 항만물류 중심축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임.
- 부산광역시는 항세, 부산항의 글로벌 항만경쟁력, 부산항만공사의 브랜드 가치 고려 시 '진해신항'이 경남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의 명칭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위상과 그동안 부산항이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관명	검 토 의 견
해양수산부	○ 부산항만공사의 명칭 변경은 그간 치열한 국제 해운항만 시장에서 쌓아 올린 부산항 및 부산항만공사의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 접근 필요 - 최근 글로벌 선사 간 해운동맹 재편 및 지정학 분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 속에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전 세계 교역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거점항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부산, 상해, 싱가포르 등 주요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	○ 항세, 부산항의 글로벌 항만경쟁력, 부산항만공사의 브랜드 가치 고려 시 '진해신항'이 경남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의 명칭 변경은 부적절 * 부산항 연관 사업체(13,129개) 중 부산 8,052개(61.3%), 경남 1,042개(7.9%)로 부산 소재 업체 비중 압도적('22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부산항만공사)
경상남도	○ 신항만의 부두 선석 및 배후단지의 경남 비중이 40년에는 61%, 88%로 항만물류 중심축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항만공사의 명칭에 대해 관련 항만 또는 해당 행정구역을 모두 병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위상과 그동안 부산항이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부산지역 5개지역 시민단체 공동입장 ('25.2)	○ 부산항만공사는 설립 후 21년 동안 세계 환적 2위 항만으로 부산항의 브랜드 구축 및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관리 공공기관으로 고유 이미지 구축. 항만연관산업 관련, 부산에 소재지의 88.5%, 매출액의 96.4%, 종사자의 89.6%가 밀집

□ 따라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관할구역에 따른 항만위원 동수 구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위원회 구성 시 항만의 위치 및 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가 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위치 및 공사의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⁵⁾,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⁶⁾ 이에 따라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지자체 추천위원으로 부산광역시 2명과 경남 1명 등 총 7명(법률상: 15인 이내)으로 구성되어 있음.

[항만공사별 항만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구성 인원	7명	7명	7명	7명
국가 추천	4명	4명	4명	4명
지자체 추천*	부산시 2명 경남도 1명	인천시 3명	전남도 3명	울산시 3명

* 항만 이용자단체 대표 1명 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5) 「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 그런데, 부산항 신항 및 제2신항(진해신항)은 부산과 경남에 걸쳐 개발되고 있음에도, 항만공사 운영의 주요사항(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기본재산 취득·처분, 결산 등)의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2명, 경남도 1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항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24년 기준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 '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24개 선석(51%) 진해에 위치할 예정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 항만의 항만의 위치 및 공사의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지자체가 같은 수의 항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항만이 소재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행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⁷⁾에서 항만공사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시·도지사는 추천 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7)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항만위원 추천권을 동수로 추천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방식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7명으로 구성한 시행령의 추천 인원을 해당 법령에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항만위원 동수 변경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관련이 큰 바, 해당 지자체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경상남도도 부산항은 경남과 부산에 위치하지만 기관 명칭은 부산항만공사로 사용하고 있고, 예산,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은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지역 간 차별이 있으므로, 항만위원회 구성 시 항만의 위치 및 공사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가 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기관명	검 토 의 견
해양수산부	○ 지자체가 추천하는 항만위원 동수 변경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관련이 큰 바, 해당 지자체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부산광역시	○ 항제, 부산항 연관 사업체 중 부산소재 비율*이 경남에 비해 월등히 높기때문에 위원추천권을 부산과 경남에 동수로 부여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부적절함
경상남도	○ 부산항은 경남과 부산에 위치하지만 기관 명칭은 부산항만공사로 사용하고 있고, 예산,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은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지역 간 차별이 있으므로 관할구역에 따른 항만위원 동수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함
부산항만공사	○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항만위원회 개요

-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항만공사별 7명(지자체 추천 3명)
- (임기) 2년 + 1년(연임)
- (자격)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자문 업무 분야의 전문가
 -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역할) 항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중요사항 심의·의결
 -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결산, 투자 및 출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정관 변경 등